

Q&A

제품안전 질의응답

Q&A 제품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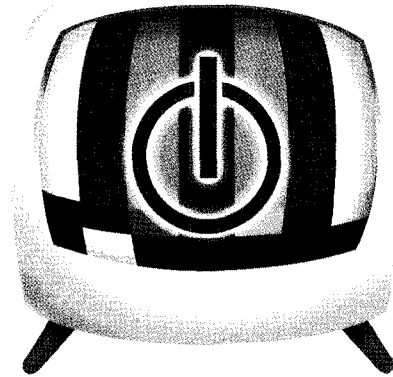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현재 국내 TV에서 보면 전원마크 표기인(전원대기표시 : 일명 사과마크)가 표기되어 있는데 나라마다 표기가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반드시 사과마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인 'TV는 적용안전기준의 K60065(오디오·비디오기기의 안전)의 14.6.3항에서 전원스위치의 'ON 상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호 표시방법은 K60417(기기에 사용하는 도식기호, 색인, 일람표 및 각 시트)의 5009번 기호를 사용하여 전원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동 기호는 전기분야 국제표준인 IEC 60417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전원마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Q2

옥외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사용하기 위한 네온싸인 등기구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A

'네온싸인 등기구'는 옥외용 광고물로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소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자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제품에 사용되는 전원전선 및 플러그, 네온변압기 등 안전인증대상 부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3

환자의 배뇨·배변을 자동으로 처리하며 온수로 세정하고 온풍으로 건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동배설물 처리기가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품목인지요?

A

환자용 자동 배설물 처리기(AC 100V, 50/60Hz)는 배뇨·배변을 자동으로 처리하며, 온수로 세정하고, 온풍으로 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용 전기기기 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Q4

드라이세제 및 다목적 세정제가 자율안전확인대상인지요?

A

세탁소 등에서 드라이클리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합성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이 세제'가 주로 일반 가정에서 의류 등을 세탁하기 위해 물과 함께 사용하는 세제인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합성세제'에 해당됩니다. '다목적 세정제'가 추가적으로 합성세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세정제' 및 '합성세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